

圖協臨時總會會議錄

1. 日 時 4294年 4月 23日 上午 11時
2. 場 所 中央教育研究所(서울)
3. 議 題 定款修正의 件 其他事項
4. 參席者 58名(內 40名은 團體會員資格
을 兼有) (發言者敬稱省略)

開會 上午 11時
 會務報告(嚴事務局長) 時間關係로 一般
 會務報告를 省略하고 臨時總會議題인
 定款修正은 지난 1月 10일의 定期總會
 에서 委嘱한 4人委員會案을 2次의 理事
 會에서 慎重히 審議한 끝에 提案되었다
 는 것을 報告함.

嚴事務局長 金洵植會長께서 지난 定期總
 會에서 辭意를 表明한 바 있으나 當日總
 會의 收拾을 為하여 臨時總會까지 會務
 를 맡아주시고 4月 21日에 開催된 理事
 會에서 굳게 辭意를 表明하시고 今日
 總會에 不參하셨으니 司會를 누가 맡아
 주시느라에 對하여 물는 바 金敬洙理事
 (成大圖書館長)가 맡아 주시도록 함.

金敬洙議長 開會辭에 代하여 되도록 短
 時間內 마치도록 會議를 進行하겠다는
 要旨의 人事.

議長 定款修正案의 審議에 對하여 물는 바.
 金泰律(中央教研)修正案起草委員案과 理
 事會修正案案 어느 것을 審議資料로 할
 것인가에 對하여 說明을 要請.

張一世(梨大)(修正案起草委員) 起草委員
 會案을 理事會에 提出하여 理事會에서
 審議한 後에 理事會案으로 總會에 提出
 하기로 決定되었다는 經緯를 說明.

朴熙永(外大) 成員에 對하여 물는 바,
 嚴事務局長 現在出席者 58임을 報告함.
 議長 團體會員의 代表者는 個人會員을
 兼할 수 있으니 會議가 成立된다는 것을

附記.

張一世(梨大) 會議成立을 認定하되 出席
 者에 限해서 表決權을 주자는 提議에
 全員同意.

李鍾達(釜山大) 舊定款과 新定款의 差異
 가 있다면 그 根本趣旨가 어디에 있는
 가를 묻다.

任成根(全北大) 定款修正의 理由를 묻는다.
 白麟(서울大) 定款修正案條文中 4人委
 員會修正條文은 4人委員會에서 理事會
 修正條文은 理事會에서 각각 說明하기
 바란다는 發言.

議長 4人委員會를 代表하여 張一世會員
 에게 說明要請.

張一世(梨大) 修正한 目的은 現定款이
 요래된 것이라 現實에 맞지 않고 또한
 보다 民主的으로 고치자는 데 있었다 特히
 修正에 重點을 둔 곳은 5條 會員 9條
 任員 11條 任員 選出方法인데 9條 任員에
 있어서는理事若干名을 30名으로 顧問
 과 參與는 刪除하였고 이로서 任員陣을
 強化하고 不必要한 任員制度를 (顧問,
 參與) 滅止하려고 했음 11條 2項으로서
 館長以外의 個人會員이理事陣에 參加할
 수 있게 하였고 11條 2項의 但書는 即
 級과 職員級의 調和를 為하

旨의 說明, 5項 評議員·

人會員도 될 수 있겠금

은 總數의 3分之 1이

록 하므로서 調

金炯基(忠南大)

잘못으로 빼

朴熙永(外大)

條 5項도 없

嚴事務局長 두어

任成根(全北大) 30條의 文句修正이 必要 하지 않느냐? 即「定款變更은 文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効力を 發生한다」로修正하면 좋겠다.

議長 節次問題이니 그대로두어도 無妨하다는 說明.

李鍾達(釜大) 第一讀會를 거쳐서 全體의 으로 檢討하자는 意見.

議長 只今까지의 討議를 第一讀會로 보고 第二讀會로 드려가는 것이 어떠냐?

任鍾淳(延大) 改正된 條項과 舊定款條項의 差異條文을 먼저 討議하고 그 다음에 全體의 으로 討議하자는 動議를 可決.

嚴事務局長 修正된 것만 朗讀.

議長 第 5條에 對하여 묻는바 異議 없음.

議長 第 9條에 對하여 묻는바 異議 없음.

議長 第11條 2項은 合쳐서 「理事, 監事 는 評議員會가 團體會員 및 個人會員中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로 修正할 것을 물어 可決됨.

崔成勛(海洋大) 評議員의 構成比率에 對하여 묻다.

張一世(梨大) 現實의 으로 不必要하다.

金泰律(中央敎研) 個人會員이 理事會에 많이 參加하도록 했다는 뜻에서 修正案을 내도록했는데 3分之 1을 넘지 못하도록 制限한 意圖는 무엇이냐?

白麟(서울大) 이 問題는 여러가지 客觀的事情을 考慮한 것인줄 안다.

李瓊雨(水原市立) 比率을 定하는 것 보다 积極的으로 參加하도록 하자.

崔成勛(海洋大) 中央集中보다 地域別이나 學校의 機能別로 比率을 定하는 것 이 좋다.

金有根(麗水文化院) 全圖書館의 發展을 期待하자면 地方에도 開放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千惠鳳(東大) 館長은 個人會員도 團體會

員도되니 從前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 限界가 暫昧하다.

金鍾洙(全南大) 3分之 1 以內로 制限한 것은 當然한 일로 안다. 그 理由는 圖協의 目적이 定款等 3條에 「圖協은 圖書館 및 讀書施設의 提携下에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한다」라고 明示되고 있으니 어디까지나 團體가 主가되고 있다. 理事會의 實質的인 活動을 爲하여 個人會員에게 門戶을 開放한것인데 萬一 圖協理事陣을 館長아닌 個人會員이 多數를 차지하게 되면 圓滿한 運營이 困難한것이므로 3分之 1로 制限한 것은 實情에 맡는 賢明한 것이라는 要旨의 發言, 適切한 比率로 任員을 選出하여야 할것이다.

千惠鳳(東大) 3分之 1 制限에賛成한다. 그러나 定款을 修正한 動機에 立脚한다면 團體會員아닌 個人會員으로 해야 한다.

議長 「任員選出에 있어 圖體會員이 個人會員을 兼할수없다」로 解釋한다는 諒解事項으로하고 넘기면 어떠냐는 意見.

金京一(京畿高) 修正案의 本意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니 選出할 때에 그런趣旨로 하자는 賛成發言可決.

議長 地方任員에 對한 件도 諒解事項으로 하자는 意見에 同意.

白麟(서울大) 評議員이理事가 될 수 있다라는 明文이 있으면 좋겠다.

議長 當然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金宗會(延世醫大) 15條成員에 對하여 委任狀을 認定한다는 但書를 붙이자.

議長 事務局에서 委任狀을 받도록 하자는 意見에 同意.

議長 이로서 改正된 條文은 討議된 것으로하고 第二讀會를 마친다.

金炯基(忠南大) 24條의 緊急時의豫算變更를 理事會에서 하기 보다 評議員會에서 하는 것이 合理的이 아닐까?

議長 國家機關의 境遇도 그려니 無妨하다.
 李鴻彦(漢陽大) 委任制度는 一切削除하자.
 議長 團體의 性格上 委任制度가 없을수 없다.

李鴻彦(漢陽大) 會社의 境遇와 달라 圖
 協의 本然의 姿勢를 찾기 為하여 無誠意한 委任狀을 認定해서는 안된다.

金京一(京畿高) 理事會, 總會도 그렇게 아니할 수 없다. 成員시키기 為해서 不可避하다. 21條를 살펴야한다.

李光春(春川高) 折衷案으로서 總會의 成員을 3分之 1로하고 委任制度를 두자.

金宗會(延醫大) 12條에 重任할수 있다는 項을 2回나 3回로 但書를 두자.

千惠鳳(東大) 2年을 1年으로하면 좋지 않겠는가.

金鍾洙(全南大) 本來 1年이었다가 2년이 되었다. 2년쯤되어야 事情을 알고 協力할수 있기 때문이다.

李瓊雨(水原市立) 第 6條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한다는 條項을 폐자.

事務局長 實情을 說明하고 亦是 理事會의 承認을 얻는것이 좋다.

任鍾淳(延大) 定款修正討議終結動議가 可決矣.

議長 第二議會를 끝내고 第三議會는 새로 選出되는 會長과 理事會에 一任하자는 意見이 可決.

議長 任員選出에 對하여 물는바.

任成根(全北大) 理事會의 任期가完了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既得權을 박탈하는 것이니 定款에 明示해야 한다는 意見이可決.

金京一(京畿高) 定款修正에 따라 새로운 任員을 選出하도록 하자.

張一世(梨大) 修正한 理由가 任員改選하자는 뜻이다.

議長 任員改選을 오늘하느냐 다음에하느냐?

金京一(京畿高) 오늘하자는 動議가 成立.

議長 定款修正에 따라 起起된 缺員에 對하여 시만 하느냐?

朴熙永(外大) 定款의 內容에 따른다면 全部改選하는 것이 좋다.

金京一(京畿道) 全員改選動議가 可決.

朴熙永(外大) “4294年 3月 23日臨時總會에서 改正된 定款에 依하여 全任員을 改選한다. 改選된 任期는 다음總會까지로한다”는 動議可決됨.

議長 任員選出方法에 對하여 물는다.

金容灝(大田大) 먼저 評議員을 選出함에 있어 詮衡委員을 뽑아놓고 休會하고 나중에 그것을 認准하기 為하여 詮衡委員을 먼저 뽑자는 動議가 可決됨.

任鍾淳(延大) 詮衡委員을 5名으로 하고 議長이 指命토록 하자는 動議가 可決됨.

議長 詮衡委員名單發表 白麟, 張一世, 金京一, 金泰律, 朴熙永

議長 詮衡委員에게 評議員選出을 一任하고 點心休會宣言.

續開 午後 3時正刻

事務局長 名單發表(30名의 評議員中 團體 20名 個人 10名)

議長 評議員이 理事, 監事를 選出하시기 바란다. 理事數도 評議員에게 一任하자는 動議可決.

議長 評議員이 別室에서 任員選出하는 동안 休會를 宣言.

議長 繼開宣言하고 新任 任員名單을 發表하여 承認함.

理事 17名(團體會員 12名, 個人 會員 5名) 監事 2名(名單別添)

議長 理事會가 別室에서 會長, 專務理事, 常務理事를 人選하는동안 休會宣言.

議長 繼開하고 任員名單發表(名單別添)

議長 其他 討議事項에 對하여 물는바, 別案件이없고 時間도 오래되어 閉會를 宣言(4時 10分)

議長 金 敬 淚

記錄 嚴 大 燐

第1次 評議員會 會議錄

日時 4194年 4月23日 下午3時10分

(臨時總會當日)

場所 中央教育研究所

參席 (團體會員) 國立圖書館, 서울大學
校, 延世大學校, 梨花大學校, 成均館大
學校, 全南大學校, 釜山大學校, 廉北大
學校, 全北大學校, 韓國研究圖書館, 陸
士圖書館, 京畿高校, 廉南高校, 濟物浦
高校

(個人會員) 金泰律, 金京一, 朴熙永
白麟, 李載喆, 李喆珪, 張一世
千惠賦

案件 任員選出에 關한件

司會 (金敬洙) 任員選出에 對하여 물는
바 多數議員의 發議로 理事數를 團體會
員에서 10館, 個人會員에서 5名으로 하
되 團體會員의 館種別 比率은 다음과과 같
이 決定함.

大學圖書館 5館 (中央3, 地方2)

公共〃 2〃 (中央1, 地方1)

特殊〃 1〃 (中央1)

學校〃 2〃 (中央1, 地方1)

金敬洙 團體會員을 中央에서 1館, 地方
에서 1館, 각각增加하자는 動議가 成
立可決되어 團體會員이 12館으로됨.

司會 理事選舉方法에 對하여 물는바 多
數議員 發議로 銓衡委員에게 一任하되
銓衡委員의 構成比率은 團體會員에서 3
名(梨大 李鳳順, 全南大 金鍾洙, 成均
館 金敬洙), 個人會員에서 2名(朴熙永,
白麟)을 각각 選出함.

(註) 以上 選任된 銓衡委員 5名이 別室
에서 人選함.

司會 銓衡委員의 任員人選名單을 發表
(名單은 別添)

司會 評議會의 議案을 議了하였으므로
閉會를 宣言. 3時10分

第1次 理事會 會議錄

日時 4294年 4月23日 午後3時40分

(臨時總會當日)

場所 中央教育研究所

參席 梨大(李鳳順) 延大(任鍾淳 代理)
成大(金敬洙) 國立(徐炳殷 代理)
全南大(金鍾洙) 廉北大(朴乙龍)
釜大(李鍾達) 韓國研究(朴啓弘 代理)
晋高(朴泰臣 代理) 朴熙永(外大)
白麟(서울大) 李載喆(延大)
張一世(梨大)

案件 會長, 專務理事, 常務理事, 互選의
件

司會 (金敬洙) 開會를 宣言하고 選出方
法에 對하여 물는바 多數理事發議豆無

記名投票를 하기로 可決

司會 投票結果를 發表

會長 閔泳珪

專務理事에 金敬洙 理事가 推戴되었으
나 6月另 成大圖書館長의 任期가 完
了된다는것으로 循意를 굳게 表하므로
董天 理事를 再推戴키로됨

常務理事 國立圖書館(公共)

梨大圖書館(大學)

韓國研究圖書館(特殊)

京畿高等學校(學校)

司會 議案을 完了하고 閉會를 宣言함
(3時30分)

臨時總會 參席者各單(4294年4月23日)

〈接 受 順〉

團體會員 國立圖書館, 奉天大, 梨花女大, 延世大, 晉州高, 慶南高, 中央工業研究所, 國防部科學研究所, 全北大, 忠南大, 中央教育研究所, 春州高, 檜大, 釜山大, 漢陽大, 京畿道, 韓國外大, 農銀, 海洋大, 金州北中高, 陸軍政訓學校, 弘益大, 水原市立, 釜山市立, 成大, 空軍中央圖書館, 隊士, 普成高, 陸軍軍需學校, 濟物浦高, 東國大, 國防研究院, 全南大, 公州師大, 忠州肥料, 南大門圖書館, 大田師範, 韓國研究圖書館, 慶北大, 清州市立 (以上40個圖書館)

個人會員 朴泰臣, 金斗弘, 李赫秀, 金有根, 崔元鐸, 任成根, 金炳基, 金泰律, 張一世, 徐炳殷, 李光春, 鄭碩基, 朴德柱, 崔大燮, 金興炫, 金世翊, 朴利範, 李濬彥, 金京一, 白麟, 朴熙永, 尹相麟, 任鍾淳, 최성낙, 박유식, 강희술, 심재영, 조강제, 李瓊雨, 李鍾達, 黃見漢, 李春熙, 金宗會, 李在觀, 김성환, 金容大, 金讚五, 崔根滿, 張順熙, 최철수, 曹寧生, 千惠鳳, 정병완, 李夢熙, 金鍾洙, 金敬洙, 李澤俊, 金應泰, 李重福, 宋光勉, 李鳳順, 金容瀨, 閔泳珪, 朴啓弘, 李明喜, 朴乙龍, 宋文憲, 李載喆 (以上 58名)

주 제 명 표 목 표

이 재 철 편

XIX 498面
四六倍版
高級模造紙
클로스洋裝
冊 5,000 冊

發行所 延世大學校
販賣處 延世大學校圖書館